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창업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등〉

■ 조정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798호)

2024. 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유인규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중소기업 지원사업 조사 대상에 창업중소기업 지원사업 포함 ...	2
※ 참고자료	7
1. 중소기업 지원사업 조사 현황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조정식의원 등 16인
2. 발의연월일 : 2024. 6. 21.
3. 회부연월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및 현황조사,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집중 지원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현황조사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평가와 만족도 조사 대상에 창업중소기업을 별도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2 및 제6호).

Ⅲ. 검토의견

1. 중소기업 지원사업 조사 대상에 창업중소기업 지원사업 포함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평가와 만족도 조사(이하 “중소기업 지원사업 조사”라고 함)의 대상에 창업중소기업 지원사업이 포함됨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2 및 제6호).

현행	개정안
제20조의3(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분석·평가 및 효율화(이하 “효율화”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0조의3(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 ①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2의2. 중소기업 <u>지원사업</u> 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평가	2의2. ----- <u>지원사업(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포함한다)</u> -----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6. 중소기업 <u>지원사업</u> 에 대한 만족도 조사	6. ----- <u>지원사업(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포함한다)</u> -----
7. (생략)	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중소기업 지원사업 조사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재정지출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사업 분석·평가, 사업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 법(「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3 신설을 통해 그 근거가 명시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러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조사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시스템의 현행화와 상시분석 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 분석 및 평가,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및 지원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다고 함.

그런데 우리 정부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다수의 부처 등¹⁾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업 현황 관리 및 성과 평가, 그리고 이러한 평가 결과를 활용한 정책 및 사업 예산의 조정기능이 다소 미흡하여 유사·중복·저성과 지원사업에 대한 비효율적 재원배분 및 사업간 연계성 부족과 같은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조사의 대상에 창업중소기업 지원사업이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창업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촉진되는 효과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1) 창업지원종합계획(2021~2023)에 따르면 12개 중앙행정기관 등이 창업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 중소기업자의 정의를 규정(제2조)하고 있으나, 개정안의 “창업중소기업”이란 용어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창업중소기업”, “창업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의미나 그 범위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²⁾에서는 “창업기업”을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둘째,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제3항은 창업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현황조사 등의 실시 근거를 이미 마련³⁾하고 있어, 다시 이 법(「중소기업기본법」)에 관련 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창업지원정책의 효율화)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따라 수행되는 창업지원사업(이하 “창업지원사업”이라 한다)이 기존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창업지원사업 간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는 등 창업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창업지원정책(「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3 및 제20조의5를 따른다.

참고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제3항에서는 이 법(「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의3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분석·평가 및 효율화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법(「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의5⁵⁾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창업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 중복성 여부 등에 대하여 협의(중소기업지원사업 사전협의제)하도록 하고 있음.

셋째, 개정안처럼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2 및 제6호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만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포함된다고 명시할 경우 같은 항 제1호·제2호·제4호·제5호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생기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4)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3(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을 통하여 관리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분석·평가 및 효율화(이하 "효율화"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범위, 분류, 분석 및 평가기준의 마련
2. 중소기업 지원사업 간 역할 분담 및 연계성 강화
- 2의2.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평가
3. 효율화에 따른 제도 개선 및 예산반영 의견 제시
4. 중소기업 지원사업 간 중복성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5.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성과분석
6.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7. 그 밖에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5(협의 및 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 중복성 여부, 수혜자 선정 등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창업지원사업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2022년 관련 조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을 신설하여,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현황조사, 분석·평가, 만족도 조사 등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화하였는바, 추가적인 법 개정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법제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제3항에서 창업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3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에 따라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창업중소기업이 창업기업을 의미한다면 창업중소기업을 별도로 현황조사 등의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 6788-5463

【참고자료 1】 중소기업 지원사업 조사 현황

1. 사업개요

- (목적)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조사, 성과평가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재정지출 효율화
-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창업기업 포함)
- (기간) '11 ~ 계속

2. 사업내용

- 중소기업지원사업 현황조사 및 활용
 - 중소기업지원사업 현황조사 및 현행화
 - 분야별 중소기업지원사업 분석 및 효율화 방안 도출
-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 분석 및 평가
 -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 중소기업 지원정책 만족도 조사

3. 그간의 추진실적('21~'24년 실적)

- (현황조사·활용) '15년부터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조사를 통해 통합관리시스템(SIMS)의 지원사업 현행화 및 상시분석 서비스 제공
 - * ('21) 19개 부처, 310개 사업 (창업 : 7개 부처, 22개 사업)
 - * ('22) 21개 부처, 341개 사업 (창업 : 7개 부처, 19개 사업)
 - * ('23) 18개 부처, 530개 사업 (창업 : 7개 부처, 19개 사업)
 - * ('24) 18개 부처, 470개 사업 (창업 : 6개 부처, 15개 사업)
- (성과평가) '20년부터 연도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추진계획 수립 및 평가, 평가결과와 관련 향후 개선방향 등을 도출해 중소기업 정책심의회에 보고하고 관계부처에 공유
 - * ('21) 11개 부처, 128개 사업 (창업 : 5개 부처, 11개 사업)
 - * ('22) 12개 부처, 137개 사업 (창업 : 6개 부처, 17개 사업)
 - * ('23) 15개 부처, 169개 사업 (창업 : 6개 부처, 13개 사업)
 - * ('24) 15개 부처, 130개 사업 (창업 : 6개 부처, 11개 사업)

- (만족도조사) '14년부터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혜기업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사항을 발굴
 - * ('21) 조사대상 : 14개 부처, 303개 사업, '20년 수혜기업 10,008개사
(창업 : 6개 부처, 수혜기업 918개사, 28개 사업)
 - * ('22) 조사대상 : 14개 부처, 305개 사업, '21년 수혜기업 12,035개사
(창업 : 6개 부처, 수혜기업 1,496개사, 34개 사업)
 - * ('23) 조사대상 : 18개 부처, 342개 사업, '22년 수혜기업 13,096개사
(창업 : 7개 부처, 수혜기업 1,228개사, 29개 사업)
 - * ('24) 조사대상 : 17개 부처, 318개 사업, '23년 수혜기업 13,037개사
(창업 : 8개 부처, 수혜기업 1,085개사, 37개 사업)